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1590 호 2026. 11. 26.(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7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75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53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요청(26-97)]·····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54호[하천 점용허가 고시 요청(26-98)]·····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55호[도로명주소 고시]····· 1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99호[2027년 하천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12호[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주민열람공고[울산 도시바람길숲(창평지구) 조성사업]]·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19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허가26-92호)]····· 2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20호[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행정예고 공고]····· 29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6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규칙으로”를 “규칙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든 사항”을 “사항”으로, “서명·날인하여야”를 “서명·날인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같은 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항”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을 “공고한”으로, “응시수수료 전부”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로, “환급하여야”를 “환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을 "다수인 대상이 아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자는"을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인정하면"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인정하면"을 각각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요구하면 미리"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사람에게는”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사하면”을 “종사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출장하면”을 “출장할 때에는”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인정하면”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응시하면”을 “응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가산하는 자격증 및 가산비율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를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을 “다수인 대상이 아닌”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에”를 “공무원을”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 합격자의 등록)”을 “(신규임용시험 등 합격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로, “하면”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제3항가목의”를 “별지 제2호 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인정하면”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면”을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7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5조의2)의 제목 “(자격증 가점)”을 “(자격증 등의 가산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를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를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로 한다.

제27조의2(종전의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 적용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①「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자연재해대책법」

3.「소하천정비법」

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승강기 안전관리법」

10.「지진·화산재해대책법」

11.「풍수해보험법」

1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 중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격무·기피 업무에 계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27조의4(실적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9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며, 제26조의2를 제27조로 하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32조, 제26조의2 및 제33조로 하며, 제26조의3을 제30조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29조(종전의 제28조)제1항 중 “보직하여야”를 “보직해야”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9조)제1항 중 “구청”을 “구”로,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는”을 “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①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3조(종전의 제32조)제1호 중 “구 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평가위원은 상급”을 “평가위원은 상급”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구성방법, 평가항목”을 “구성방법, 평가항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활용 하며”를 “활용하며”로, “경우에 참고자료”를 “경우에 참고자료”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

2. 제1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3. 제17조에 따른 특수지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인사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관련 규정 등 정비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제6조제2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제6조제3항 및 제4항)
- 응시연령 하향 조정(제8조)
- 시험위원 위촉 제한 확대(제12조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문구 변경(제15조제2항)
- 경력채용시험 점검 의무화로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신설(제16조의2)
- 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등록절차 명확화(제21조)

나. 재난안전 및 민원분야 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

- 특별승진임용기준 정비(제27조)
-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기준 정비(제27조의2)
- 근무경력 가산점의 부여기준 신설(제27조의3)
- 실적 가산점 근거규정 신설(제27조의4)

다.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전보·전출 예외 적용 기준 신설(제31조의

2)

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제34조)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6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성 및 임무) 조례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반장란과 제2호가목의 반장의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담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반 장	·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자연재난 업무 팀장

별표 4 및 별표 5 타) 수색, 구조구급반의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수색, 구조・구급반	・안전총괄과(북부소방서, 해양경찰서)

별표 5의 현장지원반(ɣ)의 해당 재난관리 국·소 소속 직원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장지원반(ɣ)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 소속 직원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2조의2 관련)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성별 및 구호약자를 고려한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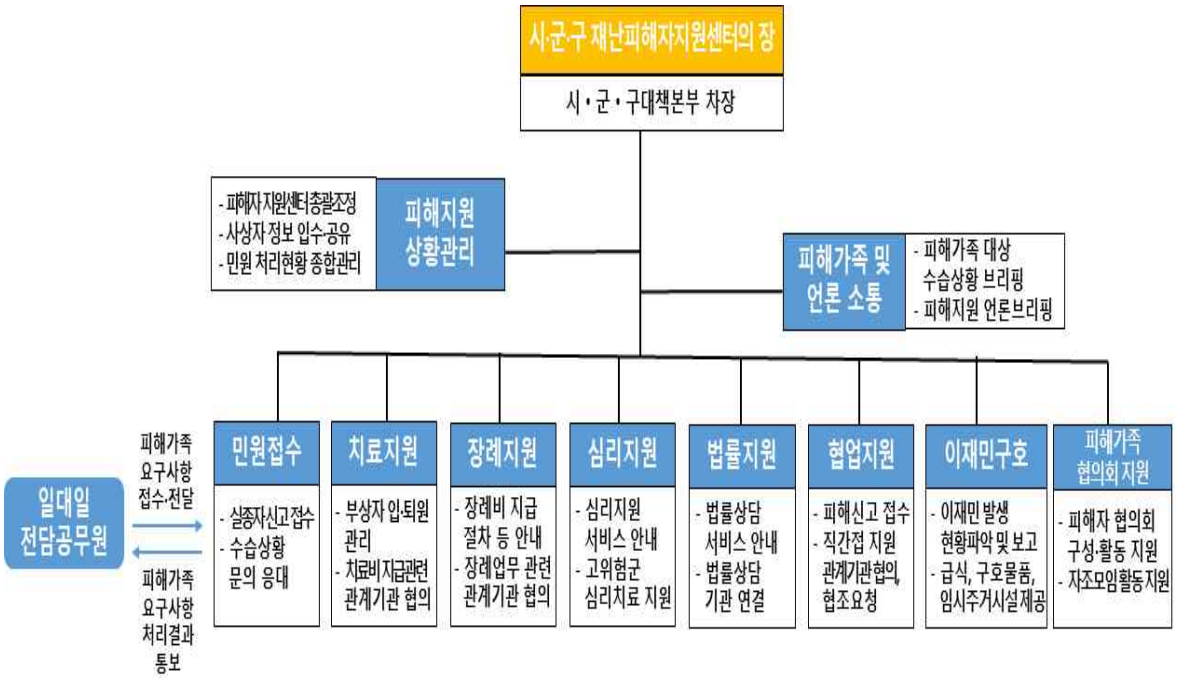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 편성기준’ 마련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성 및 임무에 관한 규정 신설(제2조의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신설(별표 1의2)

다.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별표 4, 별표 5)

○ ‘수색, 구조・구급반’에 「해양경찰서」 추가 등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5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1041-1번지 외 1필지	하 천 명 칭	○ 신명천
점 용 내 용	○ 농업용 관정 설치	점 용 면 적	○ 3.4㎡
점 용 기 간	○ 2026. 11. 24.(화) ~ 2099. 12. 31.(영구)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5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강진*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69, 3층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2026 울산 북구주민대회 행사 개최	**점용 면적**	○ 33.0㎡
점용 기간	○ 2026. 11. 29.(일) 12:00 ~ 17:0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255호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신천동 745-64	매곡로 47	2026. 11. 25.	2026. 11. 26.	2009. 7. 10.	매곡동 지명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함
송정동 780-1	지당2길 13	2026. 11. 25.	2026. 11. 26.	2004. 1. 5.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
호계동 783-4	산업로 1340	2026. 11. 25.	2026. 11. 26.	2009. 12. 10.	물류수송을 위한 산업도로를 의미하는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변경

※ [당초] 수동중앙길 3-3(단독주택 2개동) : 매곡동 657-8번지와 657-1번지외 1필지 각 1개동 위치

※ [주소 유지] 매곡동 657-8(수동중앙길 3-3) / [주소 변경] 매곡동 657-1번지외 1필지(호계5길 42-2)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수동중앙길 3-3 (매곡동 657-8 외 2)	호계5길 42-2 (매곡동 657-1 외 1)	2026. 11. 26.	주소사용자 및 소재지, 출입구가 다른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변경(분할)하여 사용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매곡로 47	2026. 11. 24.	건물 멸실 후 신축	
지당2길 13	2026. 11. 24.	건물 멸실 후 신축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6)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599호

하천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하천관리단	10명	안전건설국 건설과 치수계	○ 경미한 시설물 보수 ○ 하천정화 ○ 하천제방 풀베기 등	2027. 2~ 2027. 11

※ 단, 사정에 따라 **인원수 및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자격기준

채용분야	자격기준 및 우대조건
하천관리단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거주자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우대**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 ○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발행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체검사서에 의함) **○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27. 2. ~ 2027. 11.

나. 근로시간 : 주 5일(월~금), 1일 7시간(09:00 ~ 17:00)

※ 주5일 근무(주35시간)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업무량 및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가능

다. 보 수

1) 일 급 : 77,560원/일
2) 각종수당 : 가족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공정수당 등
3) 가족수당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
4) 공정수당 (근로계약 체결 시 세부 지급 기준 및 내용 별도 안내)
5) 교통비 : 5,000원/일, 급량비 : 8,000원/일(출근일에 한하여 지급)
6) 지급 및 방법: 매월 말 및 익월 초 본인 계좌 입금

라. 기타사항

1)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2)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함
3)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하천관리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할 시 문서로 1회 경고하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음

4.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1. 23.(월) ~ 2026. 11. 30.(월)

나. 서류접수

1) 기 간 : 2026. 11. 30.(월) ~ 2026. 12. 2.(수)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치수팀 (2층)
3)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다. 심사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1) 서류전형(1차) : 2026. 12. 23.(수) (합격자 개별 통보)

※ 서류 심사는 서류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2) 면접 및 체력심사(2차) : 2027. 1. 13.(수) 09:00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체력심사방법 : 체력 검정(자체 심사 기준)

※ 응시자는 10분 전까지 참석, 불참 시 응시 포기로 간주

라. 합격자 발표 : 2027. 1. 20.(수)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함

5. 제출서류(붙임참고)

가. 표준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마. 체력시험 응시 동의 서약서 1부

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최종합격 후 제출**

6.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선발기준표에 의함

나. 최종합격자 계약 포기, 임용결격사유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결원 발생시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선발**

7. 채용서류 반환청구

가. 시행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청구대상 : 불합격자 중 희망자

다. 청구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30일 이내

라.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본인 방문)

마. 반환방법 : 서류 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청구기간 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채용서류 일체 폐기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라.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치수팀(☎ 052-241-7884)

이 력 서

(1쪽)

<필수>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주요 경력사항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여부	보훈번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2027년 하천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평가기준

구분	항목	배 점 항 목		배점
하천관리단	서류심사 (20점)	• 거주지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경우	10
			울산 북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
		• 공공기관 업무경력	관련 경력 2년 이상	10
			관련 경력 2년 미만	5
			경력 없음	0
	면접심사 (40점)	• 기간제근로자로서 정신자세 • 업무 관련 지식 및 적응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40
	체력심사 (40점)	마대 옮기기(남·여 공동 평가)		20
		마대들고 앉았다 일어서기(여성)		20
		장비 작동 및 취급요령(남성) ※ 예취기, 기계톱, 전정기 등		20
가산항목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5, 10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3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 - 1612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열람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산 도시바람길숲(창평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목적 : 울산 도시바람길숲(창평지구) 조성사업
2. 사업계획
   - 위치 : 창평동 746-1번지 외 11필지
   - 내용 : 울산 도시바람길숲(창평지구) 조성
   - 규모 : 토지형질변경 8,514㎡
3. 시 행 자 :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4.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5. 열람기간 : 2026. 11. 20. ~ 2026. 12. 4.(14일간)
6.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붙임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방문 제출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중식시간 12:00 ~ 13:00, 휴일 제출 불가)
7. 열람 장소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한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도시과(☏052-241-7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편입조서

[울산 도시바람길숲(창평지구) 조성사업 사업구간 내 개발제한구역]

순서	주 소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계	12필지		25,757	8,514
1	북구 창평동	1232-55	전	166	161
2	북구 창평동	1232-89	전	2459	12
3	북구 창평동	746-1	철	3498	2500
4	북구 창평동	1277-1	철	306	199
5	북구 창평동	742-1	철	3525	1403
6	북구 창평동	1255-3	철	94	60
7	북구 창평동	783-2	철	493	183
8	북구 창평동	831-2	철	1812	1165
9	북구 창평동	1254	도	9503	831
10	북구 창평동	800-2	철	1289	481
11	북구 창평동	828-3	철	2007	1315
12	북구 창평동	1225-10	철	605	204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열람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619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경동도시가스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가재길 97(천곡동)	노선명	○ 중로 1-121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55.0m ○ A(일시) = 99.0㎡ ○ A(계속) = 8.8㎡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620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6. 11. 24. ~ 12. 14.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설치예정장소	수 량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매곡동 689-2)	이동식 1대	

※ 이동식CCTV로 북구 관내 불법투기지역 수시이동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라. 제출방법

o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자원순환과(연암동)

o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4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